

MY BRAND INHHA



인하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목차

★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주요사항	1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2
Ⅱ. 전형 일정	4
Ⅲ. 전형 안내	
1. 지원자격	5
2. 지원자격 심사기준	6
3. 전형방법 및 동점자처리기준	8
Ⅳ. 제출서류	
1. 제출서류	10
2. 서류 제출 안내	12
3. 서류 제출 유의사항	14
Ⅴ.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유의사항	
1. 합격자 발표 유의사항	15
2. 미등록 충원 유의사항	15
Ⅵ. 지원자 유의사항	16
Ⅶ. 전형료 및 환불	18
Ⅷ. 부록	
1. 사유서	19
2. 전형료 환불 요청서	20
3. 사실증명발급 · 열람신청위임장	21
4. 교내·외 활동증빙서류 목록	23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주요사항

1. 모집인원 및 전형 방법 (※ 1-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참고(p.2))

전형명	계열/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 방법 및 기타사항									
재외국민(2%)	인문	22명	· 필답고사 100% · 전년대비 계열 내 선발 모집단위 추가 -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첨단바이오의약학과(최대모집 가능인원: 4명) · 전년대비 최대모집가능인원 증감									
	자연 (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45명										
	<table><tr><th>증가</th><th>감소</th></tr><tr><td>항공우주공학과(4명→5명) 신소재공학과(7명→8명) 인공지능공학과(8명→10명) 첨단바이오의약학과(0명→4명)</td><td>공간정보공학과(4명→3명) 식품영양학과(3명→2명)</td></tr></table>		증가	감소	항공우주공학과(4명→5명) 신소재공학과(7명→8명) 인공지능공학과(8명→10명) 첨단바이오의약학과(0명→4명)	공간정보공학과(4명→3명) 식품영양학과(3명→2명)						
	증가	감소										
	항공우주공학과(4명→5명) 신소재공학과(7명→8명) 인공지능공학과(8명→10명) 첨단바이오의약학과(0명→4명)	공간정보공학과(4명→3명) 식품영양학과(3명→2명)										
	간호학과	2명	· 필답고사 100% · 1단계: 필답고사 100% · 2단계: 필답고사 60% + 면접고사 40%									
의예과	1명											
합계	70명											
국외 전 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전 계열	적정인원	· 서류평가 100%									
공통	자연	· 학칙 개정에 따른 화공에너지공학부 신설 및 학과(모집단위) 명칭 변경										
		<table><tr><th>변경전</th><th colspan="2">변경후</th></tr><tr><td>화학공학과</td><td rowspan="2">화공에너지공학부</td><td>화학공학전공</td></tr><tr><td>이차전지융합학과</td><td>이차전지공학전공</td></tr></table>			변경전	변경후		화학공학과	화공에너지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이차전지융합학과	이차전지공학전공
		변경전	변경후									
화학공학과	화공에너지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이차전지융합학과		이차전지공학전공										

2.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 가. 반영방법: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전형별 총점(1,000점)에서 감점으로 반영함
- 나. 학교폭력 조치사항 호수에 따른 감점 점수표

구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조치사항	서면사과	보복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감점기준	-1점			-10점		-50점		부적격	

-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 있음”에 체크해야하며, 허위 신고 및 관련 서류 미제출자는 본교 입학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 **국내고 또는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재학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복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감점기준을 적용함
- ※ 부적격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 불합격 처리함
- ※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 기재 내용을 반영함. 다만,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교 입학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될 수 있음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조치사항의 경우 반영하지 않음
-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함



I.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 Innovation X Heritage" INHA UNIVERSITY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재외국민(2%)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모집인원(명)	최대모집 가능인원(명)	
인문	경영 대학	경영학부	경영학과◆	22	10	
			파이낸스경영학과◆		3	
		아태물류학부◆			5	
		국제통상학과			5	
	사회 과학 대학	행정학과			5	
		정치외교학과			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경제학과			5	
		소비자학과			2	
		아동심리학과			2	
		사회복지학과			2	
		한국어문학과			3	
	문과 대학	사학과			2	
		철학과			2	
		중국학과			4	
		일본언어문화학과			4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 ¹⁾			6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5	
자연	공과 대학	기계공학과		45	11	적정인원
		항공우주공학과 ²⁾			5	
		조선해양공학과			5	
		산업경영공학과			3	
		화공에너지 공학부	화학공학전공★		8	
			이차전지공학전공		4	
		고분자공학과			3	
		신소재공학과★			8	
		사회인프라공학과			5	
		환경공학과★			3	
		공간정보공학과			3	
		건축학부 ³⁾	건축공학전공★		7	
			건축학전공(5년제)			
		에너지자원공학과			2	
		전기전자공학부 ⁴⁾			18	
		반도체시스템공학과			8	
	자연 과학 대학	수학과			2	
		통계학과			2	
		물리학과			3	
		화학과			4	
		해양과학과			3	
		식품영양학과			2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재외국민(2%)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모집인원(명)	최대모집 가능인원(명)	
자연	소프트웨어 융합 대학	인공지능공학과	45	10	적정인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5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²⁾		4	
		디자인테크놀로지학과		4	
		컴퓨터공학과		16	
	바이오 시스템 융합 학부	생명공학과		4	
		생명과학과		3	
		첨단바이오의약학과		4	
		바이오식품공학과		2	
	의과대학	의예과●	1	1	-
	간호대학	간호학과●	2	2	적정인원
인문	국제	IBT학과(International Business&Trade)◆	-	-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만 모집
자연	학부 ⁵⁾	ISE학과(Integrated System Engineering)	-	-	
합 계			70	-	-

¹⁾ 영미유럽인문융합학부는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언어문화' 중 자유롭게 주전공(트랙)을 선택할 수 있음

²⁾ 항공우주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와의 경우, 2~4학년 교과과정은 송도국제도시 항공우주융합캠퍼스에서 진행될 수 있음

³⁾ 건축학부는 건축공학전공(ABEEK 공학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4년제 교과과정 운영)과 건축학전공(KAAB인증 기준에 따른 5년제 교과과정 운영)으로 나뉨

⁴⁾ 전기전자공학부는 학부 내 모든 심화트랙* 자율 선택 가능(세부 트랙명 및 분야는 변경될 수 있음)

*전기전자공학부 세부트랙: 반도체집적회로, 전기에너지, 컴퓨터인공지능신호처리, 통신네트워크, 제어로봇바이오융합

⁵⁾ 국제학부 IBT학과·ISE학과는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형만 지원 가능함

· "★"가 표시된 공과대학의 모집단위는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에서 제시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시 "공학전문" 학위가 수여됨. 단, 학과 사정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음

· "●"가 표시된 의예과는 (사)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간호학과는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정부인증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대학으로 선정되었음

· "◆"가 표시된 경영대학의 모집단위는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에서 경영학 교육 분야 국제 인증을 취득하였음

Ⅱ. 전형일정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 Innovation X Heritage" INHA UNIVERSITY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26. 7. 6.(월) 09:00 ~ 7.10.(금) 17:00	- 인터넷 접수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제출기간 이후에는 입력(수정) 불가
서류 제출(온라인)		2026. 7. 6.(월) 09:00 ~ 7. 13.(월) 15:00	- 제출기간 이후 제출 불가 - p.12 '서류제출안내' 참고
필답고사장 안내		2026. 7. 17.(금)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 재외국민(2%) 전형 지원자에 한함
필답고사		2026. 7. 23.(목)	
1단계 합격자 발표		2026. 7. 31.(금)	- 재외국민(2%) 전형 지원자에 한함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지원자 제외)
의예과 면접고사		2026. 8. 6.(목)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충원일정 및 충원방법 안내 포함)
최초합격자 발표		2026. 9. 3.(목)	
최초합격자 등록 (온라인 문서등록)		2026. 12. 21.(월) ~ 12. 23.(수) 예정	- 등록 방법은 합격자 발표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안내
미등록 추가충원	추가합격자 통보	~ 2026. 12. 29.(화) 18:00 예정	
	최종 추가합격자 등록 마감	~ 2026. 12. 30.(수)	
최종합격자 등록 (최종등록금 납부)		2027. 2. 10.(수) ~ 2. 12.(금)	
최종합격자 원본서류 제출		2027. 2. 15.(월)까지 <마감일 입학처 도착분까지 유효>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 반드시 등기우편 등 배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 -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수신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본관 1층 입학팀 (우 22212)

※ 상기 전형일정 및 고사 운영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직전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Ⅲ. 전형별 안내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 Innovation X Heritage" INHA UNIVERSITY

1. 지원자격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고교 졸업년도 제한 없음)

가. 자격 구분별 요건

1) 재외국민(2%)

자격 구분	자격 요건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외 파견 재직자의 자녀	부모	구분	내용
		재직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현지 취업자의 자녀	자녀 (학생)	체류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 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재학조건	·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교과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 교과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체류조건	·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국외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국내 검정고시 학력 인정)

2.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 외국학교 및 학력의 인정 기준

- 1)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외국학교는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과정 등 불인정)
- 3)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학력을 인정합니다.

나. 공통사항 - 입학자격 인정 기준 시점

- 1) 대한민국의 학년도가 종료되는 2027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 2)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합니다.

다. 공통사항 - 재학기간 인정 기준

- 1)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국내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3학년제의 1학년은 유치원 과정으로 정규교육 연한에 미포함됩니다.

- 2) 해당 학년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면서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는 학기별 성적(학점) 취득 증빙서류와 학기별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자료(학기 시작일과 종료일, 2학기제 및 3학기제 여부 등)를 충분히 갖추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비 서류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재학 기간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3)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인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개 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4)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복수인정 가능)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수학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6)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라. 재외국민(2%)

- 1) 국외 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2) 국외 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 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3) 국외 재학기간
 -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국외 근무자(부모 중 1인)의 국외 근무기간 내에 해당국에서 재학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 단, 부모 근무지 국가의 지역적, 종교적, 이념적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교 입학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3국의 수학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자는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사유서(본교 소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 4) 국외 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 대한민국 입국일만 국외 체류일수에 산입합니다. (대한민국 출국일은 국외 체류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마.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 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3. 전형방법 및 동점자 처리 기준

가.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 구분	모집단위	전형 방법	선발배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필답고사	면접고사	서류평가	서류심사
재외국민(2%)	전 모집단위 (의예과 제외)	1단계	5배수	100%	-	-	-
		2단계	1배수	-	-	-	P/F
	의예과	1단계	10배수	100%	-	-	-
		2단계	1배수	60%	40%	-	P/F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 모집단위	일괄 합산	적정인원	-	-	100%	P/F
북한이탈주민	전 모집단위	일괄 합산	적정인원	-	-	100%	P/F

※ 고사결시 및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2) 필답고사 반영방법

구분	인문계열	자연계열	계
과목 및 비율	영어(50%), 국어(50%)	영어(50%), 수학(50%)	100%

3) 필답고사 출제범위 :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과목	출제범위(고교 과목명)
영어(공통)	영어I, 영어II, 영어 회화, 영어 독해와 작문
국어(인문)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수학(자연)	수학, 수학I, 수학 II

4) 고사시간 및 고사내용

- 필답고사

계열구분	시험과목	문항	점수	고사시간
인문	영어 + 국어	영어 20문항, 국어 20문항	영어 50점, 국어 50점	100분
자연	영어 + 수학	영어 20문항, 수학 20문항	영어 50점, 수학 50점	

☞ 전년도 기출문제 :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inha.ac.kr) > 재외국민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면접고사

모집단위	면접 내용 및 출제범위(고교 과목명)	평가시간
의예과	- 면접내용: 전공적합성 및 발전가능성, 전공에 대한 관심 및 태도, 전공에 대한 기본 소양, 자기 이해 및 가치관 등 - 출제범위: 생명과학(I, II),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공정성을 위해 가번호를 부여하여 면접 진행	15분 내외

☞ 전년도 기출문제 : 입학처 홈페이지(admission.inha.ac.kr) > 재외국민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서류평가

지원자격 구분	평가 내용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기초학업역량, 진로탐구역량, 공동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동점자 처리 기준 : 전형 총점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1) 재외국민(2%)

- 1단계 선발 시

가) 공통과목(영어 필답고사) 성적 우수자

나) 공통과목(영어 필답고사) 고배점 문항 다득점자

다) 계열별 고사과목(인문계열: 국어, 자연계열: 수학) 고배점 문항 다득점자

※ 상기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인 경우 모두 선발

- 2단계 최종 선발 시

가) 면접고사 성적 우수자(의예과만 해당)

나) 공통과목(영어 필답고사) 성적 우수자

다) 공통과목(영어 필답고사) 고배점 문항 다득점자

라) 계열별 고사과목(인문계열 : 국어, 자연계열 : 수학) 고배점 문항 다득점자

마) 최종 고등학교 졸업(예정)일 기준 국외 중·고등학교 수학학기가 많은 자 (중복학기 제외)

바) 원서접수일 기준 국외 실체류 일수가 많은 자 (중복학기 제외)

2)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가) 진로탐구역량 점수가 높은 자

나) 공동체역량 점수가 높은 자

다) 기초학업역량 점수가 높은 자

3) 기타

-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하고도 동점인 경우, 본교 입학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IV. 제출서류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 Innovation X Heritage" INHA UNIVERSITY

1. 제출서류

가. 재외국민(2%)

1) 공통 제출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주요사항
1	필수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출력 가능
2		재학·근무·거주기간 기록표	
3		외국학교 현황 기록표	
4		초등학교 재학·성적증명서	- 제출서류를 통하여 학생의 재학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국내 혹은 재외한국학교 재학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필수
5		중학교 재학·성적증명서	
6		고등학교 재학·성적·졸업(예정)증명서	- 외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수 (교육부인가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영사확인 불필요) * 재학·성적증명 서류의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학기 기재 요망 (예: G1-1 성적증명서, G10-1 ~ G12-2 재학 및 성적증명서 등)
7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 외국학교의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및 브로셔 등도 가능 (* 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URL 표기)
8		여권 사본	- 지원자 본인, 부, 모 각 1부
9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자 본인 기준 1부 * 부모 이혼 시,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필수
10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지원자 본인, 부, 모 각 1부
11		출입국사실증명서	
12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부록3]	
13	선택	사유서(해당자) [부록1]	- 해당자에 한함(학기 결손, 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제3국 수학 등) - 해당 학교(기관) 증빙자료 미첨부 시 사유서 제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학 기간, 체류 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 포함

2) 재직 형태별 제출서류(필수)

재직 형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국외 파견 재직자	필수	재직증명서	- 외국 근무 기간 및 국가명 기재
현지 취업자		재직증명서	- 외국 근무 기간 및 국가명 기재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 이력	- 개인소득 납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현지 자영업자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 개인소득 납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나.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연번	구분	제출서류	주요사항
1	필수	입학원서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출력 가능
2		재학·거주기간 기록표	
3		외국학교 현황 기록표	
4		초등학교 재학·성적증명서	- 국내 혹은 재외한국학교 재학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필수 - 외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 필수 (교육부인가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영사확인 불필요) ※ 재학·성적증명 서류의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학기 기재 요망 (예: G1-1 성적증명서, G10-1 ~ G12-2 재학 및 성적증명서 등)
5		중학교 재학·성적증명서	
6		고등학교 재학·성적·졸업(예정)증명서	- 외국학교의 학기 개시일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및 브로셔 등도 가능 (※ 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URL 반드시 표기)
7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8		여권 사본	- 지원자 1부
9		출입국사실증명서	
10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부록3]	
11	선택	사유서 [부록1]	- 해당자에 한함(학기 결손, 중복, 월반, 휴학, 조기졸업, 제3국 수학 등) - 해당 학교(기관) 증빙자료 미첨부 시 사유서 제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재학 기간, 체류 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 포함
12		기타* [부록4]	- 교내·외 활동증빙서류 목록[부록4]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함 · 공인어학 성적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해당국가 대학입학시험 성적증명서, 기타 교내·외 활동증빙서류 등 ※ 해당 문서에 로그인 정보(ID/PW)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진위확인을 위한 코드 등이 있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 기타서류는 고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10개 항목, 총 2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A4 규격의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함

다. 북한이탈주민

연번	제출서류	구분	주요사항
1	입학원서	필수	-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작성 및 출력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필수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선택	- 관할 기관 발급
4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	필수	-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북한 소재 고교 졸업자의 경우 학력확인서 제출 - 국내 혹은 재외한국학교 재학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필수
5	기타* [부록4]	선택	- 교내·외 활동증빙서류 목록[부록4]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함 · 학력증명서 또는 해당국가 대학입학시험 성적증명서 등 ※ 해당 문서에 로그인 정보(ID/PW)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진위확인을 위한 코드 등이 있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 기타서류는 고교 입학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10개 항목, 총 2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A4 규격의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함

2.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 방법

- 1) 온라인 서류 제출은 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모든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PDF로 스캔한 후 1개의 압축파일(ZIP)로 업로드합니다.**
- 3) 온라인 제출서류별 파일명 설정 방법
 - 재외국민(2%)

연번	제출서류	파일명	비고
1	입학원서	수험번호_입학원서.pdf	원서접수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일괄 업로드
	재학·근무·거주기간 기록표		
	외국학교 현황 기록표		
2	초등학교 재학·성적증명서	수험번호_초등학교학적서류.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3	중학교 재학·성적증명서	수험번호_중학교학적서류.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4	고등학교 재학·성적·졸업예정증명서	수험번호_고등학교학적서류.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5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수험번호_학사일정표.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6	여권사본	수험번호_여권사본.pdf	지원자, 부, 모 서류를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7	가족관계증명서	수험번호_가족관계증명서.pdf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수험번호_재외국민등록부등본.pdf	
9	출입국사실증명서	수험번호_출입국사실증명서.pdf	
10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수험번호_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pdf	
11	국외 재직형태별 제출서류	수험번호_재직증빙서류.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12	사유서(해당자)	수험번호_사유서.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연번	제출서류	파일명	비고
1	입학원서	수험번호_입학원서.pdf	원서접수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일괄 업로드
	재학·거주기간 기록표		
	외국학교 현황 기록표		
2	초등학교 재학·성적증명서	수험번호_초등학교학적서류.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3	중학교 재학·성적증명서	수험번호_중학교학적서류.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4	고등학교 재학·성적·졸업예정증명서	수험번호_고등학교학적서류.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5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수험번호_학사일정표.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6	여권 사본	수험번호_여권사본.pdf	
7	출입국사실증명서	수험번호_출입국사실증명서.pdf	
8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수험번호_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pdf	
9	사유서	수험번호_사유서.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10	기타	수험번호_기타.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 북한이탈주민

연번	제출서류	파일명	비고
1	입학원서	수험번호_입학원서.pdf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수험번호_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pdf	
3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수험번호_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pdf	
4	고등학교 성적·재학·졸업(예정)증명서	수험번호_고등학교학력서류.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5	기타	수험번호_기타.pdf	일괄 스캔하여 업로드

3. 서류 제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1) 모든 제출 서류는 원서접수 후 PDF로 스캔하여 원서접수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 2)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3) 모든 서류는 판독이 가능하고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평가에 부적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를 받은 사본을 스캔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5)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국·영문 번역서를 첨부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모든 서류의 제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부담합니다.
- 7) 제출서류 상 지원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8) 본교에 제출한 서류는 접수 이후 어떠한 사유에도 반환 또는 사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9) 본교에서는 지원자격 심사를 위하여 상기 제출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문서 등록 후 최종합격자 원본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의 원본(영사 확인(혹은 아포스티유) 포함)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마감일 입학처 도착분까지 유효)
- 최종합격 후 기한 내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원서접수 시 업로드한 파일과 상이할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학적 서류

- 1) 국내 초·중·고교는 성적, 재학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국외 초·중·고교의 재학증명서에는 재학기간(년, 월, 일) 및 재학기간에 따른 학년, 학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학 및 성적증명 서류의 우측 상단에 해당 학년·학기를 기재합니다. (예: G1-1 성적증명서, G10-1~12-2 재학 및 성적증명서 등 자유롭게 기재)
- 3) 외국학교 학사일정표에는 학제일정(학기 시작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의 제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출력물 제출 시 웹사이트 주소 반드시 표기)
- 4) 조기졸업, 월반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유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는 최종 합격 후 고교 졸업증명서를 영사 확인(아포스티유)을 받은 이후 입학 전까지 추후 보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관련 제증빙 자료는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불필요)

다. 기타 서류

- 1)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출입국 조회 기간을 중학교(7학년) 입학일자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초등학교(1학년) 입학일자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2)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국외 체류 당시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불가하거나 재외국민 등록 이전으로 인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해당국 최초 입국일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를 본교 양식의 사유서에 기재하고 해당국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사본 등의 대체 문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V.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유의사항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 Innovation X Heritage" INHA UNIVERSITY

1. 합격자 발표

- 가. 지원자는 합격여부(최초 및 충원합격)를 발표 일정에 따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합격자 개별통보 없음)
- 나.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다. 등록금은 본교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시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 라. 수시모집 대학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모집에 합격한 대학 중 반드시 1개의 대학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치(문서)등록 포함> 2개 이상 대학에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마. 수시모집에 합격(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바. 전형 총점 동점자는 본교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모든 기준이 동점인 경우에는 본교 입학 관련 위원회에서 선발대상자를 심의합니다.
- 사. 등록금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본교 등록금 반환 내규를 적용합니다.
- 아.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부족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2. 미등록 충원

- 가. 최초합격자의 등록시한이 종료되었으나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전형 성적순위에 따라 미등록 충원을 실시합니다. 일정 및 발표 방법은 추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수험생은 수시 합격자 발표 시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추가합격 통보방법 및 일정을 숙지한 후, 추가 합격자 공지일에 직접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 다. 개별통보(전화충원)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모든 연락처를 수시로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 ※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의 기재오류, 미기재 또는 연락두절로 인하여 3회 이상 합격통보가 되지 아니할 경우 미등록 충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 추가합격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하는 충원 업무의 특성상 추가합격 포기에 대한 반복 불가
- 라. 합격자 조회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합격 여부 조회와 상관없이 합격자로 발표한 자는 최종 합격자로 간주하여 정시모집(추가모집 포함)에 지원 불가합니다. (재외국민(2%) 전형만 해당)
- 마.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 다른 대학의 합격 통보를 받고 타 대학 등록을 결정한 본교 합격자는 즉시 본교에 등록 포기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고, 본교 기등록자는 「온라인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본교 등록을 결정한 추가합격자는 타 대학에 기등록 또는 추가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해야하며 해당 대학의 안내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 사. 2026. 12. 30.(수)는 미등록 충원대상자 등록일로, 이미 통보한 추가 합격자의 등록과 다른 대학에의 추가 등록을 위한 환불 업무만을 시행합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참고

이의신청 안내 및 접수 방법

- 가. 신·편입학(수시, 정시, 편입학,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포함) 응시생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입학처 입학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 중에 있음
- 나. 대상(해당 전형) 및 자격: 모든 전형 대상 / 지원자 본인이 신청 가능
- 다. 이의신청 처리 기준 및 절차는 본교 입학전형 이의신청 처리 지침에 따름

Ⅵ. 지원자 유의사항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 Innovation X Heritage" INHA UNIVERSITY

1. 수시모집(재외국민(2%) 전형 포함) 지원 6회 제한 및 이중등록 제한

- 가. 수시모집(재외국민(2%) 전형 포함)에서 6개를 초과한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타 대학 수시 지원 횟수 포함)
 - 초과 지원한 경우 접수시간 순서의 원칙에 따라 나중에 접수한 것을 취소함
 - ※ 지원횟수 제한 제외: 산업대학·전문대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평생학습자 전형
- 나. 수시모집(재외국민(2%) 전형 포함) 원서접수 시 각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다. 수시모집(재외국민(2%) 전형 포함)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최초합격자, 추가합격자, 등록 후 포기(환불)자 포함) 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 원칙 제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평생학습자 전형
- 라. 대학 간에는 최대 6회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예치등록 포함)해야 하며, 2개 이상 대학에 등록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의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마. 총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총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 바. 재외국민(2%) 전형: 전국 대학 신입생의 합격 및 등록상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취합하여 전산으로 검색한 결과 이중등록(예치등록 포함)과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합니다.

2. 불합격 처리 및 입학 취소

- 가. 서류접수 이후에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자격에 미달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나. 입학 후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입학을 취소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와 더불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 또는 입학 취소가 된 자에게는 향후 본교의 지원 및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7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단,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학제차이를 감안하여 수업시수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장가능)
- 라. 필답고사 및 면접고사를 결시한 경우에는 전형성적에 관계 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3. 기타사항

가. 지원자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의 게시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본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기재사항 미비 또는 오기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원자의 책임이니 신중히 입력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어떠한 사유에도 반환 또는 사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 입학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연락 두절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입학처로 전화 하여 변경된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032-860-7221~2)

마. 합격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최종합격 여부를 발표 일정에 따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군입대, 질병 등)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의예과의 경우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음)

사. 입학전형 성적, 평가내용 및 석차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의예과 지원자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가 없어야 함을 유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자. **본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규정, 재외국민특별전형 사정기준 및 본교의 별도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Ⅶ. 전형료 및 환불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 Innovation X Heritage" INHA UNIVERSITY

1. 전형료

전형 구분		전형료
재외국민(2%)	의예과	230,000원
	의예과 제외	200,000원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200,000원
북한이탈주민		70,000원

※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타 수험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을 수정,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2. 전형료 환불기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전형료를 환불합니다.

가. 전형료 전액 환불(전형료 환불 요청서 제출 필수)

아래 ①~③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①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②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질병, 사고 등)로 인하여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공식 서류로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③ 수시 6회 지원횟수 초과 등의 사유로 본교에 전형료 환불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지원자의 귀책, 단순 변심, 타대학과 전형일 중복(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전형), 대학별고사 응시대상자의 단순 결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한 원서접수 취소 및 전형료 환불 불가

나. 전형료 일부 환불

아래 ①~②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2단계 전형료 금액을 환불합니다.

- ① 재외국민(2%) 전형 지원자 중 1단계 불합격한 경우

※ 전형료 환불 요청서 제출 불필요하며 고사일 기준 1개월내 원서접수 시 작성한 전형료 환불 계좌로 환불함

- ② 재외국민(2%) 전형(의예과) 1단계 합격자 중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질병, 사고 등)로 인하여 면접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 전형료 비례 환불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전형료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지원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 반환되는 입학전형료는 원서접수 시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학교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환불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 > 재외국민 > 자료실 > 전형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제출하면 본교에서 환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록2] 전형료 환불 요청서

【전형료 환불 요청서】

접수번호 : 재특 2027 - 호

모집시기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전형	☐ 재외국민(2%) ☐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수험번호			
지원학과		성명	
연락처			
환불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후 증빙 첨부)			

위 사유로 전형료 환불을 요청합니다.

2026 . . .

신청인 : (인)

★ 전형료 환불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붙임 : 환불 관련 증빙 서류 1부. 끝.

인하대학교 총장 귀하

※ 본 양식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우편 제출
제출처 : 우)22212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본관 1층 입학팀 재외국민특별전형 담당자 앞



[부록3]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음영표시 부분 작성)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Certification of Fact will be issued for free on the government website at www.gov.kr if you apply online. When visiting an office and applying in person, you only need to present your ID card, without having to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 copy(ies)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통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copy(ies) ☐ 외국인등록 열람 ()건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 time(s)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함께 적어 신청 (국민만 해당) This question is for Koreans only		☐ 포함 Yes ☐ 미포함 No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번호) 및 체류지 포함 여부 I want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to be shown on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과거 등록번호 Previous Registration Number ☐ 포함 Yes ☐ 미포함 No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Previous Address ☐ 포함 Yes ☐ 미포함 No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부터(from) . . . 까지(to)		
용도(Purpose)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신청인 Applicant Nam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재외공관장 귀하

To th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City Office, District Office, Ward Office, Town Office, Township Office, Community Center or Overseas diplomatic mission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유의사항 Notice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Do not fill in below the shaded lines, check in [] brackets that apply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If you are a corporate applicant, please write the name of the corporation and the president for the "Full Name" of applica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for "Resident Registration No.", and telephone number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name of the person for "Telephone No." on the front side of the application form.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person.

4. 아래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75(3, 4)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those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may apply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Departure or for the issuance/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Where the principal or legal representative is not capable of expressing consent due to his/her unknown whereabouts or death, or it is obvious that the certificate will be used for the benefit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spouse,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immediate relatives or siblings of the principal's spouse (if the spouse is deceased)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Where the principal alien has permanently left Korea: the employer of the principal alien or the authorized agent of the employer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Creditors who intend to be issued or inspect the Certificate of Fact on Alien Registration: Those who is confirmed to receive favorable ruling in a trial o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financial companies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ubparagraph 3 of attached tab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hat need the Certificate to collect overdue debt, those in debtor-creditor relationship with the foreigner in question (only when event of default occurs that causes the lender to demand full repayment earlier than the original due date or maturity date has arrived and the amount of debt is more than 1 million KRW)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The contract paper, promissory note and note that prove the 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 shall be attached by the collateral documents that may guarantee official evidence such as remittance receipt, notarization and due date, etc.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ther persons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Justice for the interest of public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Authorized person shall submit his/her ID card with the Power of Attorney and authorizing person's ID card (or its copy) attached.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 to any punishment under the applicable laws if you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or receive any relevant documents with a fraudulent Power of Attorney signed by other person or sealed with a stolen seal.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The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y of issue.

[부록4] 교내·외 활동증빙서류 목록

전형명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성명	
전형구분	☐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수험번호	

연번	서류명	발행일	발행기관	비고*
1				ID / PW 입력
2				ID / PW 입력
3				ID / PW 입력
4				ID / PW 입력
5				ID / PW 입력
6				ID / PW 입력
7				ID / PW 입력
8				ID / PW 입력
9				ID / PW 입력
10				ID / PW 입력

* 해당 문서 및 비고란에 로그인 정보(ID/PW)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진위확인을 위한 코드 등이 있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